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7호
----------	------------

제출연월일: 2007. 1. 12.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대상 사업장 지정여부를 자체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2006. 11. 27 ~ 2006. 12. 1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개설·운영·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객석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 ----- ----- 이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한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시행일:2007.1.1] 제9조의2제2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밖에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营业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营业의 종류별·营业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营业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营业 등 食品류를 조리·판매하는 营业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营业.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食品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食品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食品류를 조리·판매하는 营业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营业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하는 营业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